

예산총칙

2010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07,521,904	12,225,657
일반회계		281,785,303	8,453,559
특별회계		125,736,601	3,772,098
기타특별회계		125,736,601	3,772,098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085,210	32,556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155,702	34,671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0,000	300
주택사업특별회계		94,844	2,84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04,794,845	3,143,845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80,300	5,409
치수사업특별회계		514,699	15,44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300,000	9,000
기반시설특별회계		1,000	30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		17,600,000	528,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2010년도 사고이월사업은 별첨 “사고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05,172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